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 : 오현정 의원

나. 의안번호 : 제2263호

다. 발의일자 : 2021.03.31

라. 회부일자 : 2021.04.06

2. 제 안 사 유

현재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
그 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, 수도계량기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시험비용
과 재설치에 따른 수도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용을 시장이 부담하고 있음.

그러나 수도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시험하는 수도계량기의 경우 약 84% 가 정상으로 판정되고 있고, 무분별한 시험요청으로 인해 만기 및 고장 교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의 비용을 시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시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가. 수도계량기가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에 필요한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(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련 법령: 「수도법」제38조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 토 의 견

가. 개요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험요청을
하여 시험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는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을
시험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1) 계량기 시험 비용 부담 주체 재정비(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
- 현행 조례 제20조는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, 이상여부 확인 시험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비용1)을 시(상수도사업본부)가 부담하고 있음.
 - 제20조(계량기의 시험) ① 수도사용자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산한다.
- 최근 3년간 수도계량기 시험 건수 3,827건 중 이상으로 판명되는 경우는 15.2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시험에 사용된 수도계량기는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여 페기 처분하고 새로운 수도계량기로 재설치하고 있는 바,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이상여부 확인 시험요청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.

¹⁾ 수도계량기 이상여부 확인 시험비용 + 수도계량기 대금 및 설치 비용

<최근 3년간 이상 수도계량기 시험 실적 현황>

(단위: 건, %)

구 분		합 계		2020년		2019년		2018년	
		수량	비율	수량	비율	수량	비율	수량	비율
시험 건수	계	3,827	100	1,264	100	1,337	100	1,226	100
	소형	3,437	89.8	1,154	91.3	1,176	88.0	1,107	90.3
	대형	390	10.2	110	8.7	161	12.0	119	9.7
정상	계	3,246	84.8	1,023	80.9	1,153	86.2	1,070	87.3
	소형	2,910	76.0	935	74.0	1,012	75.7	963	78.5
	대형	336	8.8	88	7.0	141	10.5	107	8.7
이상	계	581	15.2	241	19.1	184	13.8	156	12.7
	소형	527	13.8	219	17.3	164	12.3	144	11.7
	대형	54	1.4	22	1.7	20	1.5	12	1.0

○ 특히, 구경 80mm 이상의 대형 수도계량기의 경우 폐전 철거나 만기 교체를 제외한 기기 고장으로 인한 교체 건수 1,512건 중 이상 시험에서 정상으로 판명되는 비율이 22.2%(336건)를 차지하는 등 2020년 단가 기준으로 1억 7천5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2)이 소요되었고 특히 수도계량기 교체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<최근 3년간 대형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>

				고장교체	검정시험 현황			고장대비
구 분	합 계	폐전철거	만기교체	(Y)	검정시험	정상 (B)	이상	정상비율 (B/A)(%)
2018년	1,860	60	1,280	520	119	107	12	20.6
2019년	2,020	51	1,277	692	161	141	20	20.4
2020년	2,116	50	1,766	300	110	88	22	29.3
합 계	5,996	161	4,323	1,512	390	336	54	22.2

2) 대형계량기 교체 비용 산출근거(단위: 건, 천원)

		71 TI	7 7			
구 분	검정시험	검 정	결 과	'20년	정상 수도계량기 환산 금액	
T E	00/16	정상	이상	평균구매단가		
계	390	336	54		175,376	
80mm	192	166	26	335	55,577	
100mm	82	74	8	446	32,989	
150mm	75	65	10	743	48,282	
200mm	30	21	9	833	17,489	
250mm	9	8	1	2,038	16,306	
300mm	2	2	0	2,367	4,734	

- 한편, 이상 수도계량기의 시험 비용을 그 결과와 상관없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유일하지만, 서울시도 공업용 수도계량기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「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」 개정을 통해 이상시험에 따른 비용 중 이상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하도록 한 바 있음.
- 따라서 다른 시·도 이상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비용 부담 현황, 「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」 개정 현황, 현행 규정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등을 고려할 때, 동 조례안과 같이 수도계량기의 시험 비용 부담주체를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「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 조례」

제 5 조(계량기의 이상 시험) ① 공업용수 사용자 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.

- ② 제 1 항에 따른 시험결과 계량 오차가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,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.
- ③ 제 1 항에 따른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. 다만,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.